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절차는 제17조의3의 내용을 따른다.

제3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① 법 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명령을 받은 날 또는 제품의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중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등의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수거등의 계획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출입·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15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보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보완명령의 내용

⑤ 법 1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품 수거등 권고·명령을 받은 사업자 : 별지 제1호3 서식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2. 제품의 자진 수거를 하는 사업자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제25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

2를 제13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제8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결함 보고’ 접수
8.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 접수
9.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 접수
10.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 접수
11.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고조사 결과 보고’ 접수
14. 법 제15조3제1항에 따른 ‘제품수거 등의 계획서’ 접수
15.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품수거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별표 제2호가목 중 “않은”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 중 “않은”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 중 “않은”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 중 “않은”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며, 같은 표 마목 중 “않은”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고, 같은 표 사목 중 “않은”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며, 같은 표 아목 중 “않은”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표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표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15조의3제1항 |법 제27조제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제출 한 경우	2항제4의2호				
---	---------	--	--	--	--

별지 제3호서식 중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을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메일	
제품명		상표		
		모델명 (종류, 등급, 호칭)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수거등의 조치방법과 기간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따라 제품 수거등의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① (생략) ② 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수거등의 계획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절차는 제17조의3의 내용을 따른다.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① 법 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명령을 받은 날 또는 제품의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중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등의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수거등의 계획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출입·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15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보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보완명령의 내용

⑤ 법 1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품 수거등 권고·명령을 받은 사업자 : 별지 제1호3 서식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
 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7. ~ 8의2. (생략)

예) 25조(권한의 위임) -----

-----.

12. ~ 13의2. (현행 제7호부터
제8호의2까지와 같음)

[illegible][illegible]